

[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] 지역 기후시민의회 조례 제안

□ 제안 취지

- 최근 국가 ‘기후시민회의’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기후시민의회·기후시민총회·기후시민회의 등이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으며, 민선 9기 들어 더욱 확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.
- ‘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’은 “6·3 지방선거, ‘기후시민의회’로 시민주권을 찾읍시다!” 캠페인 후속으로 탄소중립기본조례 개정 방식의 “지역 기후시민의회 조례 운동”을 제안하고,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후시민의회가 상설 운영되기를 기대함.

□ 고려 사항

- ‘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’를 별도 제정할 수 있으나,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 ‘기후시민회의’를 도입한 선례를 반영하고, 일부 지자체에 마련된 숙의민주주의, 공론장·공론화(시민원탁회의 포함) 관련 조례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후시민의회를 제도화하고자 함.
- 조례 운동은 주민발안(청구), 의원·단체장 발의(청원)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역 상황 및 전략적 판단에 따라 아래 시민사회 조례 개정안 내용을 수정·보완할 수 있음. 조례 개정을 통한 기후시민의회 제도 도입이 불가능할 경우, 해당 지역 시민사회 중심의 자발적, 대안적 형태의 기후시민의회를 기획·추진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함.

□ 주요 내용

- 시민의 권리 및 단체장의 책무
-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- 기후시민의회 설치 및 운영

1. 시민의 권리 및 단체장의 책무

- ① 모든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, (지자체)와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학습, 토론, 결정할 수 있는 속의 참여의 권리를 가지며, (단체장)은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.
- ② (단체장)은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 전환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,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이 있는 법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고 하거나, 기후변화영향평가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기후시민의회에 관련 내용을 논의 의제로 제안하고 그 검토 의견이 제출되는 경우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(단체장)은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,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기후시민의회 활동을 (교육감/교육장)과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환경교육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2.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
- ① (위원회)는 속의 공론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에 포함한다.
- ② (위원회)는 기후시민의회 운영 및 권고 합의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3. 기후시민의회의 설치 및 운영

- ① (단체장)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이행 등에 관하여 시민의 속의 공론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및 평가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(지자체)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하여 상설 운영해야 한다.
- ② 기후시민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(단체장)이 성별, 연령, 지역,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(100)명 이내의 거주 시민으로 구성하고, 당사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래세대, 취약계층,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생태계 등 비인간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
- ③ 기후시민의회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(1년)으로 하되 차기 기후시민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(50)% 이내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④ (단체장)은 기후시민의회가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을 유지해야 하

며, 공개 모집, 의제 설정, 전문 자문, 의견 청취, 합의 도출, 활동 백서 등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(위원회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- ⑤ 기후시민의회는 자체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의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권고 합의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(단체장)에게 제출하며, (단체장)은 (위원회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후시민의회의 권고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(단체장)은 제5항에 따라 권고 합의문을 제출받은 날부터 (3)개월 이내에 정책 반영 여부 및 이행계획을 기후시민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, 기후시민의회는 이행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(단체장), (지방의회), (위원회)는 해당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⑦ (단체장)은 의제 설정, 합의 도출 등 기후시민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,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⑧ (단체장)은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하는 시민, 이해관계자,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기후시민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행정적,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<끝>